

3. 일반유상취득신고

*유상거래-**매매, 수분양, 교환, 경매, 공매, 현물출자** (신축=원시취득, 증여, 상속은 유상거래 아님)

기본 제출서류	
취득세신고서	+ 취득상세내역서(주택의 경우)
매매(분양)계약서	분양의 경우 잔금납부확인서
실거래신고필증 또는 검인	계약서에 검인을 받았으면 신고필증 필요없음
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	주택일 경우 (1세대4주택 확인)

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<①**주택**이고 ②계약일자 2019. 12. 4. 이후이면 제출>

-외국인이면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(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) + 세대원정보 기재서식 또는 상세내역에 기재

※ <참고> 부동산 거래시 검인대상	
<검인대상>	교환.증여, 분할, 인낙 사용승인전 분양 (2017년이후 일정규모이상 분양계약은 신고필증) ※합의해제계약서는 검인받지않는다.
<신고,검인대상이 아닌것>	상속분할협의서, 수용, 경매(공매)낙찰

■ 6~9억원 구간 세율계산식

$$\text{세율}(\%) = \text{취득가액} \times \frac{2}{3\text{억 원}} - 3$$

※ 과세표준액 150만원 마다 0.01% 씩 상승, 소수점3째자리 반올림

■ [1세대4주택 경과규정] 부칙5조

공동주택 분양(3년)

2019년 12월 3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, **2022년 12월 31일까지**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2% 세율을 적용